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42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권영세·조승환·이인선

인요한 · 김소희 · 김기웅

유영하 • 이상휘 • 주호영

김도읍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·재시공·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정·재시공·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, 공사 중지,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 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.

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또한,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,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

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.

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.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·재시공·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이를 따르지 않 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제3항, 제113조제2 항제1호).
- 나.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제7항, 제113조제1항제6호).

법률 제 호

#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7항 전단 중 "촬영하고 보관"을 "촬영·보관하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"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전단 중 "알린"을 "알리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한"으로 한다.

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25조제4항"을 "제25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6.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·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사감리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건축시공) ① ~ ⑥ (생	제24조(건축시공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⑦ 공동주택, 종합병원, 관광숙	7
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	
공사시공자는 건축주, 공사감리	
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	
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	
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	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	
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	
영상을 <u>촬영하고 보관</u> 하여야	<u>촬영·보관하고 국토교</u>
한다.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	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	제출
통부렁으로 정한다.	
	<b>–.</b>
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 ①・	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	③
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	
명령이나 처분, 그 밖의 관계	
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	

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<u>알린</u>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,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#### ④ ~ ⑭ (생 략)

제11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

<u>알리고 허가권자에게</u>
<u>보고한</u>
④ ~ ⑭ (현행과 같음)
제113조(과태료) ①
1
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게24조계7하우 이바하여 시
6.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 지 미 도여사은 참여 . H 까치
<u>진 및 동영상을 촬영·보관하</u> <u>지 아니한 자 또는 사진 및</u>
<u> </u>
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②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<u>제25조제4항</u>을 위반하여 보 1. <u>제25조제3항 및 제4항</u>--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
- 2. ~ 9. (생 략)
- ③ ④ (생 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																					•

- 2. ~ 9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